

의안번호	2217783
의 퇴 인	이용우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6A1781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3(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)	○ 기상청의 폭염·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범위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소요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3(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 등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대상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명하고, 이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소요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폭염 등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음(안 제17조의3제2항)
 - 1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
 - 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 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
- 5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갹생보호 대상자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 시 전력 취약가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후재난 발생 여부, 구체적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, 감면 범위 및 기간 등을 특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워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먼저, 전기요금 감면 요건 중 하나인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의 경우 개정안은 “기상청의 폭염·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”으로 정하고 있는데(안 제17조의3제1항), 향후 발생할 폭염 등 기후재난의 빈도나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
 - 둘째, 전기요금 감면 대상 중 일부는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17조의3제2항)
 - 1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 시 전력 취약가구
 - 셋째, 전기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17조의3제4항)
 - 참고로,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을 보면, 2025년 기준으로 할인금액은 총 7,141억원 규모임
 - 다만,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수혜 대상과 개정안의 기후재난 관련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일치하지 않음

[표 1]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

(단위 : 천호, 억원)

구 분	계약종별		도 입	할인내용(한도)	호수 (‘25.12)	할인금액				
				기존		‘21	‘22	‘23	‘24	‘25
장 애 인	주택용		'04. 3	월 8천원 한도	658	1,224	1,437	1,257	1,218	1,216
상이유공	주택용		'04. 3		6	14	16	13	12	12
독립유공	주택용		'05.12		7	12	15	13	13	14
기초생활 수 급 자	주 택 용	생계 의료	'05.12	월 8천원 한도	1,199	1,325	1,663	1,692	1,768	2,003
		주거 교육		월 4천원 한도	363	249	364	365	399	428
	심 야		'08. 1	갑 31.4%, 을 20%	21	30	40	57	57	58
차상위 계 층	주택용		'10. 8	월 2천원 한도	177	201	239	200	184	176
	심 야		'08. 7	갑 29.7%, 을 18%						
3자녀 이 상	주택용		'09. 8	20% (월 12천원 한도)	515	849	915	847	810	800
대가족	주택용		'07. 1	1단계 낮은 요율 (월 12천원 한도)	299	321	328	297	276	266
출산가구	주택용		'16.12	－	592	741	804	794	784	834
사회복지 시 설	일반용		'07. 1	20%	109	842	946	1,188	1,241	1,276
	주택용		'07. 1	21.6%						
	심 야		'08. 1	갑 31.4%, 을 20%						
생명유지	주택용		'07. 8	1단계 낮은 요율 (월 12천원 한도)	28	27	33	47	53	58
총 계					3,974	5,835	6,800	6,770	6,815	7,141

자료: 한국전력공사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